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34
----------	------

제출년월일 : 2015. 11. 1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대한 현행 조례 규정과 실제 심의 대상의 불일치로 인한 심의대상 혼선 및 심의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 용역의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기능 강화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하여 적정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예산 낭비 예방

## 주요내용

- 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2·6조)
- 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위원 확충(안 제3조 제1항)
- 다.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8조)
- 라. 심의시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신설(안 제11조)
- 마. 재심의 규정 신설(안 제12조)
- 바. 용역 추진 공무원 실명제 신설(안 제15조)
- 사.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용역 결과관리 규정 신설(안 제16·17조)
- 아. 용역의 결과 공개 규정 신설(안 제18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 예고기간 : 2015. 10. 5. ~ 10. 26.(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사항 일부반영(검토결과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3
- 방침결정문 : 붙임4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절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 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술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용역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등

**제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용역심의 대상)** ① 위원회 심의 대상인 용역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술용역 중에서 공사설계·건설사업 관리·측량 용역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
2.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3. 전액 국고보조 용역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해당 안전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용역발주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전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전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 안전에 대하여는 심의안전 용역발주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의)** 용역발주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간사)**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제1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결과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 계장, 실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 평가는 용역발주 부서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 결과 관리)**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용역 결과물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을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 결과 공개)**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도 위촉직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관 실·과		예 산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예산과장 박 광 옥
	담당·팀장 직위·성명	전전재정계장 이 억 배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세 진 (행정 3028)

## 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	---	---

용역명	
-----	--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p>용역의 개 요</p>	<p>○ 용역명 :</p> <p>○ 용역기간 :</p>				
<p>용역 사업비</p>	<p>○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p> <p>○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p>				
	<p>요구예정 시기</p>	<p>회 계 별</p>	<p>정책단위</p>	<p>편 성 목</p>	
	<p>20년 당초예산 20년 제 회 추경</p>	<p>일반회계 ○○특별회계</p>			
<p>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p>	<p>○ 계약방법 :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p> <p>○ 수행방식 : <input type="checkbox"/> 위탁형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형 <input type="checkbox"/> 자문형</p>				
<p>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p>	<p>○ 유사·중복성 여부 :</p> <p>○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p>				
<p>용역 실명제</p>	<p>○○○국장</p>	<p>○○과장</p>	<p>○○계장</p>	<p>실무관</p>	<p>비 고</p>

## 용역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 용역 활용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절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p> <p>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p> <p>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p> <p>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안산시에서</u>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절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u>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u>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p> <p>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p> <p>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p> <p>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술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b>제4조(위원회)</b> ①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u>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u>업무담당국장, 시의원 3명 그리고 관계 전문가 및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b>제3조(위원회 구성등)</b> ① <u>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u>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u>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안산시의회 의원</u></li> <li>2. <u>용역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등</u></li> </ol>
<p><b>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b>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u>2015년 12월 31일</u>로 한다.</p>	<p><b>제4조(위원회의 존속기한)</b>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로 한다.</p>
<p><b>제5조(기능)</b> 위원회는 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u></li> <li>2. <u>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u></li> <li>3. <u>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li> </ol>	<p><b>제5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u></li> <li>2. <u>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u></li> <li>3. <u>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b>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b>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제외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u></li> <li>2. <u>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u></li> <li>3. <u>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u></li> </ol>	<p><b>제6조(용역심의 대상)</b> ① 위원회 심의 대상인 용역은 <u>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u>으로 한다. 다만, 기술용역 중에서 <u>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측량 용역</u> 등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으로 대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u></li> <li>2. <u>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u></li> <li>3. <u>전액 국고보조 용역</u></li> <li>4. <u>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u></li> </ol>



현행	개정안
<p><b>제8조(회의)</b>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0조(회의)</b>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안건 용역발주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p>
<p><b>&lt;신 설&gt;</b></p>	<p><b>제11조(의견청취)</b>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b>&lt;신 설&gt;</b></p>	<p><b>제12조(재심의)</b> 용역발주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li> <li>2.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항</li> <li>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9조(간사 등)</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③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적인 사무를 주관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p>	<p><b>제13조(간사)</b>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현행	개정안
<p><b>제10조(예산편성 등)</b> 시장은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b>&lt;신 설&gt;</b></p> <p><b>&lt;신 설&gt;</b></p> <p><b>&lt;신 설&gt;</b></p>	<p><b>제14조(결과조치 등)</b>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p> <p><b>제15조(용역실명제)</b>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결과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p> <p>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 계장, 실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li> <li>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li> <li>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li> <li>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제16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b>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용역결과 평가는 용역발주 부서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b>제17조(용역 결과 관리)</b>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용역 결과물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을 용역 종료일부턴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b>제11조(수당 및 여비)</b>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비 외에 심의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p> <p><u>〈신 설〉</u></p>	<p><b>제18조(용역 결과 공개)</b>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b>제19조(수당과 여비)</b>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도 위촉직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b>제20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별첨

## 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반영 여부	검 토 결 과
오 현 갑 (도시정비 계장)	개정안 제6조 제1항의 ‘종합기술용역’을 ‘기술용역으로 ’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용어 정정 및 단서조항에 ‘기본계획’ 등의 추가 요구	일부 반영	(반영)개정안 제6조 제1항의 ‘종합기술용역’을 ‘기술용역으로 ’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정정요구한 의견은 반영함이 타당  (미반영)단서 규정(심의 제외)에 ‘기본계획’등을 추가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분야 이외에도 유사한 용역분야가 많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용역도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용역이 아닌 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심의 대상이어야 할 것이므로 의견 미반영

□ 별첨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심의)수당 및 심의자료 제작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연 삼백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예상됨.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예산과장 박광옥**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734
----------	------

제안년월일 : 2015. 12. 10.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 부실용역을 방지하고, 용역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 결과공개 등의 조항 신설함.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증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심의 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함.

## □ 주요골자

- 불필요한 “일반용역”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삭제)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신설)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성별비율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 위원회에서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 결과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을 심의토록 신설함. (안 6조제3호~제4호 신설)
- 용역심의 제외대상을 축소함. (안 제6조제2항제1호, 제3호 삭제)
- 용역과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 (안 제18조제2항)
- 불량한 용역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안 제19조)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6조제3호(원안의 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2항(원안의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3천만원 미만 용역
2.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안 제9조(원안의 제8조)의 제목 중 “제척”을 “제척과 회피”로 한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안 제18조(원안의 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종료 시 및 2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① 위원회는 평가보고서 및 용역활용 현황과 현실태를 점검하여 용역수행이 불량한 용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 의견이 있는 용역에 대하여는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중 “제7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p> <p>3."종합기술용역" 이</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술용역"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p> <p>2. "기술용역" 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 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p> <p>3. "일반용역" 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p> <p>4."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p> <p>5."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p> <p>제4조(위원회)</p> <p>①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u>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u></p> <p>4. <u>"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술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u></p> <p>제3조(위원회 구성등)</p> <p><u>&lt;신설&gt;</u></p> <p>① <u>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3. (원안 제4호와 같음)</p> <p>제3조(위원회 구성등)</p> <p>① <u>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u></p> <p>③ (원안 제2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④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시의원 3명 그리고 관계 전문가 및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4조의2 (생략) 제5조(기능)위원회는 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li> <li>2.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li> <li>3.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산시의회 의원</li> <li>2. 용역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등</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4조 (생략)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원안 제3항과 같음)</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 (원안 제4조와 같음) 제6조 (원안 제5조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안과 같음)</li> <li>2. (원안과 같음)</li> <li>3.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li> <li>5. (원안 제3호와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제외한다.</p> <p>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p> <p>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p> <p>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p>	<p>제6조(용역심의 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p> <p>1.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p> <p>2.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p> <p>3. 전액 국고보조 용역</p> <p>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p>	<p>제7조(용역심의 대상) ① 원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p> <p>1. 매년 상시 반복적인 3천만원 미만 용역</p> <p>2.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p>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원안 제7조와 같음)
<신설>	제8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신설>	①~② (생략)	①~② (원안 제8조와 같음)
<신설>	제9조 (생략)	제10조 (원안 제9조와 같음)
제8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원안 제10조와 같음)
<신설>	제11조 (생략)	제12조 (원안 제11조와 같음)
<신설>	제12조 (생략)	제13조 (원안 제12조와 같음)
제9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원안 제13조와 같음)
제10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원안 제14조와 같음)
<신설>	제15조 (생략)	제16조 (원안 제15조와 같음)
<신설>	제16조 (생략)	제17조 (원안 제16조와 같음)
<신설>	제17조(용역 결과 관리)	제18조(용역 결과 관리)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용역 결과물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15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 2호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을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18조 (생략)</p> <p>제19조 (생략)</p>	<p>① ----- ----- ----- -----제 17조 ----- ----- ----- ----- -----</p> <p>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종료 시 및 2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① 위원회는 평가보고서 및 용역활용 현황과 현 실태를 점검하여 용역수행이 불량한 용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 의견이 있는 용역에 대하여는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0조 (원안 제18조와 같음)</p> <p>제21조 (원안 제19조와 같음)</p>
<p>&lt;신설&gt;</p> <p>제11조 (생략)</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lt;신설&gt;</p>	<p><u>제20조 (생략)</u></p> <p><b>부 칙</b></p> <p>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p>	<p><u>제22조 (원안 제20조와 같음)</u></p> <p><b>부 칙</b></p> <p>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p> <p>-----</p>

